

제 호

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

1. 법 인 명:
2. 주 소:
3. 이용내용:
4. 유효기간:

「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